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년월일 : 2000.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5895호 '99.2.8)되어 도로에 마을·주유소·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 기준·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이 조례에 의한 다른도로 등의 연결은 마을·주유소·휴게소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밖의 연결의 경우에는 교통안전·도로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연결계획서,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4조).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의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안 제5조)
- 일정기준 이상의 곡선구간·경사구간에서의 다른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안 제6조).
-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시설별 가·감속차로 등의 설치기준, 연결로 등의 포장방법·분리대·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7조 내지 제12조).

3. 의 안 전 문 : 따로붙임

4.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예고기간 : 1999. 11. 26 ~ 12. 20)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도로법 제54조의6
-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
-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전문)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

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우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 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

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기타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의 교통도로과 소관 제17호중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도로과	17	자. 도로등의 연결허가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 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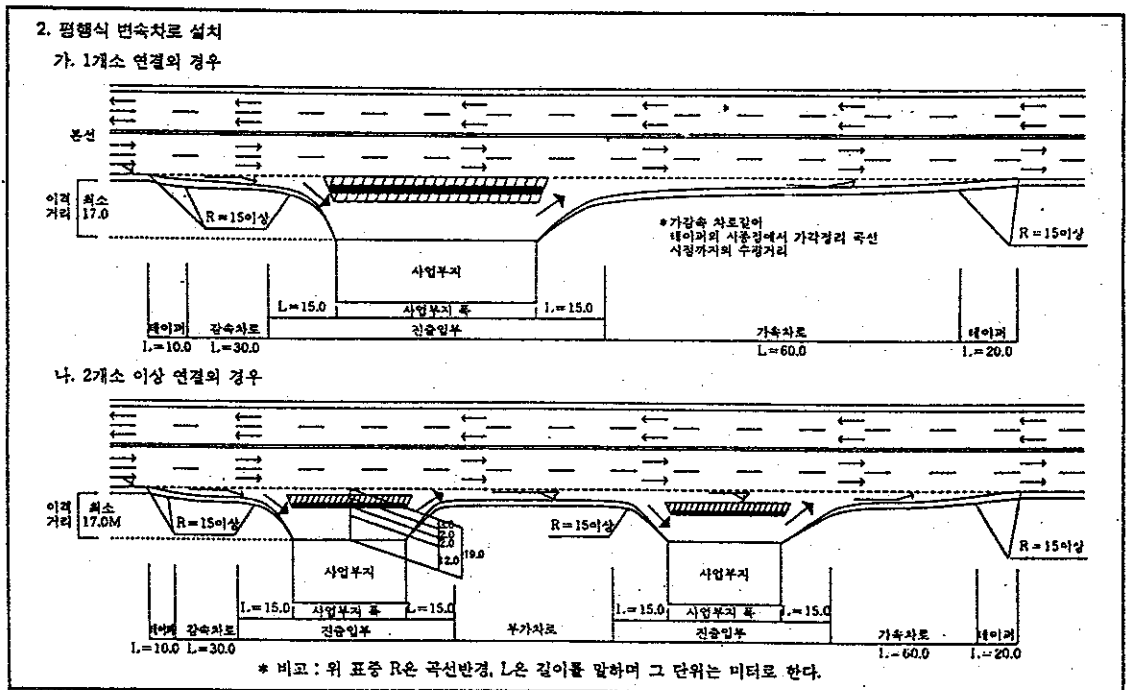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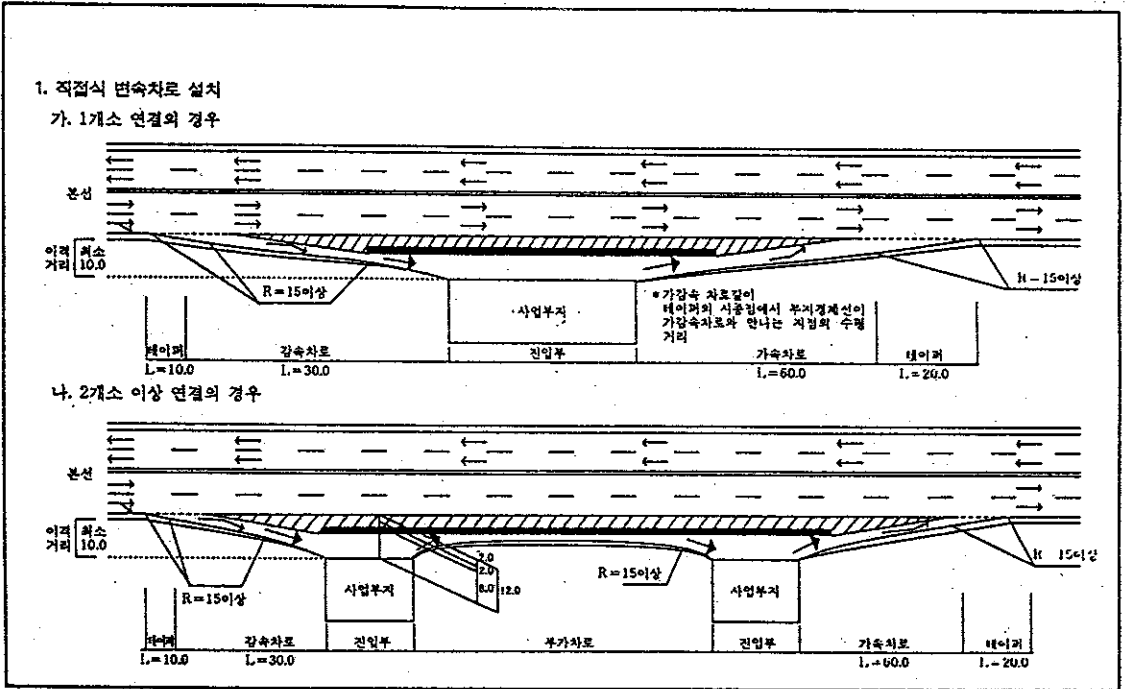
[별표 1]

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1/25,000)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 단 면 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사 도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 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미터)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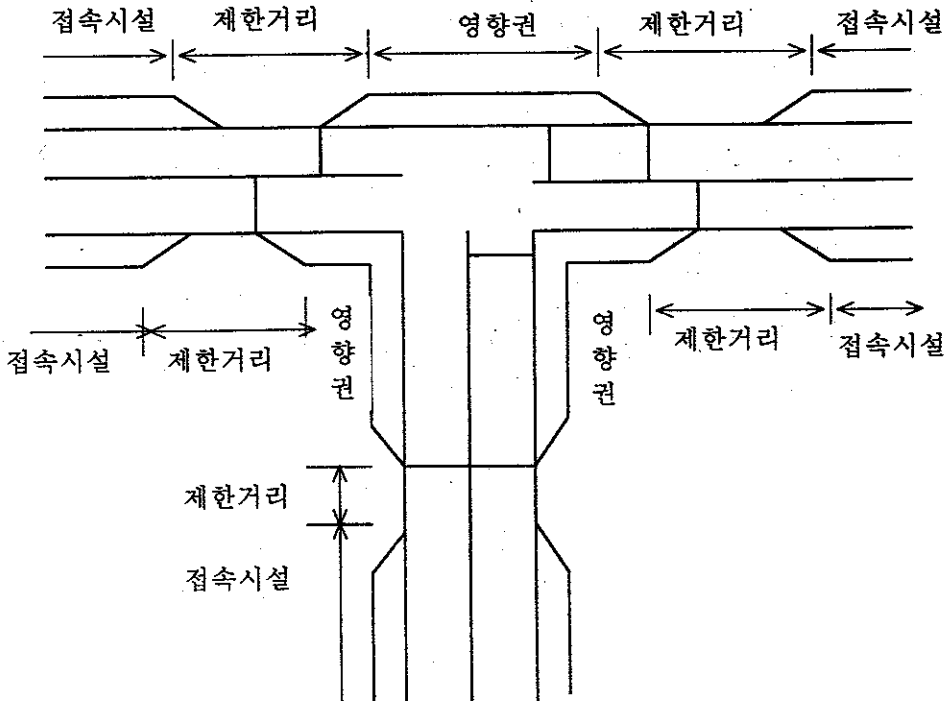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단위:미터)

구 분	4차로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 고

1. 도류화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류화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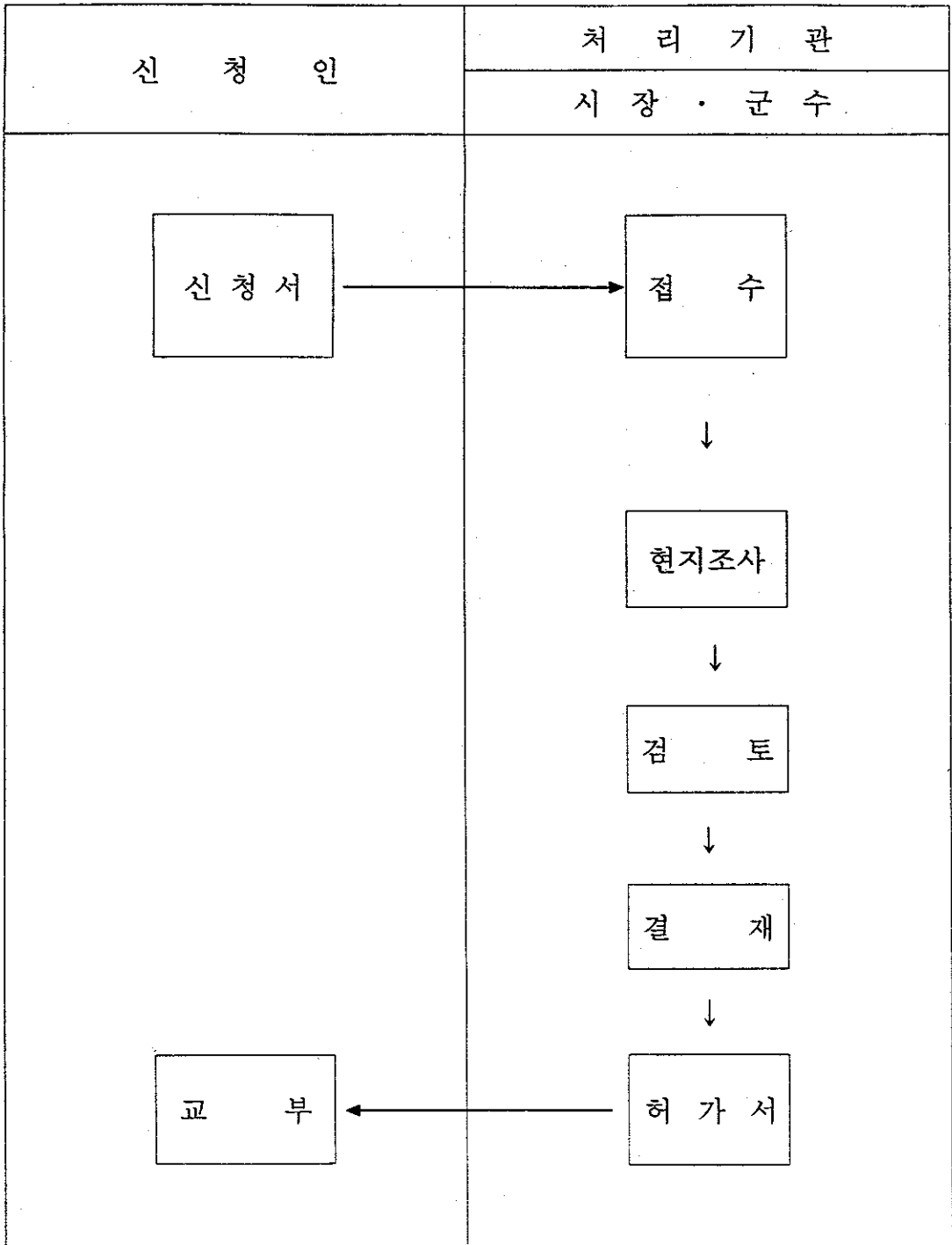
(단위: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13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이하)	-	-	도로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주 : 1)설계속도 80km/h,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는 60km/h 기준
 2)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값을 기준을 함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法令 拔萃]

<道路法> [1999. 2. 8 법률 제5894호 개정]

第54條의6(交叉方法 및 다른 施設의 連結) ①自動車專用道路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道路와 다른 道路·鐵道·軌道 또는 交通用으로 供하는 道路 其他의 施設을 交叉시키고자 할 때에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立體交叉施設로 하여야 한다. (改正 93.3.10)

②自動車專用道路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道路에 다른 道路·通路 其他의 施設을 連結시키고자 하는자는 道路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10, 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節次等 許可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除外한다)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하고, 其他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新設 99.2.8)

④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道路·通路기타 施設의 連結로 인하여 大量의 交通需要를 誘發할 우려가 있거나 交通體系상 다른 施設의 設置가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連結를 許可받은 者로 하여금 交通의 疏通을 爲한 施設의 設置·管理等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新設 93.3.10)

[본조신설 70.8.10]

<도로법 시행령>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 개정]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등의 통로등의 연결) ①법 제5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중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99.8.6)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다른 도로 또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연결시키고자 하는 도로·통로 또는 시설의 종류 및 노선명
3. 연결지점의 위치 및 사업계획서
4. 연결목적
5.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계획서 및 설계도서
6. 교통수요 분석자료
7. 실시계획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3.8.14]

<도로법시행규칙> [1999. 9. 2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제29조(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 등의 연결) ①영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 간
 3. 지정의 이유.
 4. 통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삭 제 (99.9.2)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사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우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재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축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재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축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 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기타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및 서식은 조례안과 동일”